

피해자들이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다음 사항을 증명 해야 한다.

- 심각한 인신 매매의 피해자여야 한다.
- 인신 매매 때문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다른 이유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인신 매매 된 경우는 제외)
-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조사와 기소에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 만일 피해자가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심각하고 극단적이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위 4가지 사항 모두 증명해야 함)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자는 먼저 I-914 (Application for T Nonimmigrant Status- 양식 이름임). 자격이 되는 가족들도 (예; 미성년 자녀) 신청 자격 있다.

많은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범죄 사실을 고발하면 미국에서 추방될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경찰이나 건강 보험업 관계자 또는 판사, 검사 등등, 우선 폭력적 행위 여부를 먼저 본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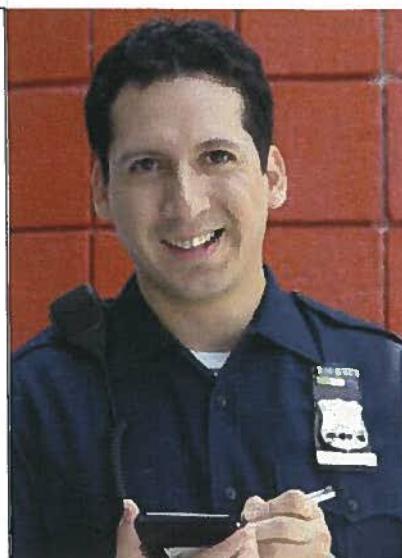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을 두려워 하지 마라는 의미로 역할 수 있음)

이 책자는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법은 범죄의 피해자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불법 체류자인) 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보호 정책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러 범죄 그리고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특정한 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이민국을 포함하여 국토 안보부 내 모든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VAWA에 근거하여 T 또는 U visa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즉, 신청자가 불법 체류자인지 이민국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고하고 보호 받으라는 뜻임)



####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청소년 특별 이민자 신분은 21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거나 버림 받은 경우에 부모와 다시 합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본국으로 송환 되는 것이 그 자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다.

학대 받거나, 방치되거나 또는 버림 받은 자녀는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서 가정 폭력, 성적 학대 또는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범죄들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USCIS 웹 사이트의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www.uscis.gov](http://www.uscis.gov)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Record

USCIS에 문의 하려면 이 번호로 전화 해요. 1 802 527 4888

다른 사람이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1 800 375 5283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어려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 유예)

어려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 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임시적으로 추방으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하며 간신히 가능한

2년 기한의 노동허가서를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이하이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거주 하였고 현재 불법체류중인 사람에 해당된다.

일부 불법 체류중인 범죄의 피해자도 이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VAWA에 근거한 자기 청원자나 U 또는 T visa 신청자도 이 추방유예를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노동 허가를 더 일찍 받는 결과가 될수 있고 U visa 신청 시 21세를 초과한 자녀에게 또는 신청한 서류가 심사증정

기간 동안 21세를 초과한 자녀에게도 해당 될 수 있다.



## Immigration Options for Victims of Crimes

###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이민 정책

법 집행 기관, 건강 보험 제공자, 기타 관계자들을 위한 정보

VAWA: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법

U (visa type): 비 이민 비자      T (visa type): 비 이민 비자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위의 상자에 뚫지는 (National Immigrant Women's Advocacy Project) (NIWAP) 추가되었습니다 NIWAP

####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법

(VAWA) Self-Petitioners 본인 청원자



일부 이민자들은 가정 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보고하거나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현재의, 또는 이전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더라도 피해자 본인들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VAWA의 조항들이 그 근거를 부여해 주고 있다.

##### 피해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피해자는 폭력 가해자와 합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또는 맺었었던 배우자 이거나 부모 또는 자녀이다.
- 피해자는 폭력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했었다.
- 피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 육체적 폭력 또는 극악한 수준의 학대를 받았다.

(이상 4가지 사항을 모두 증명해야 함. 한가지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 청원자로서 자격없음)

VAWA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됨 (법의 이름은 여성 대상 범죄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법안은 남, 여 구분없이 적용됨)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배우자이건, 자녀 또는 부모이건 상관없이, 스스로 I-360 (이민 청원 서류)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그 청원서의 공식 명칭은 I-360, Petition for Widow(er)s, Amerasians, and Special Immigrants 인데 서류 명칭이므로 번역할 필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 스스로 신청한다는 말은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해야 한단 뜻이 아니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sign, 또는 도움이 필요없단 뜻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이민국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U Nonimmigrant Status

U 비이민 신분 또는 U visa는 (U는 비자 종류의 하나임, 학생이 F, 종교인을 R 등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U는 범죄 피해자에게 주는 비자임)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데 법 집행기관(예; 경찰, 이민국 관리)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U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는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아래 나오는 I-918의 보충 서류 B를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이 확인은 이민에 관한 혜택(영주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민국에서 이민적인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반드시 합법적이 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다음 사항을 증족해야 한다.**

- 피해자로 규정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폭력 피해자여야 함, 간단한 사기 피해자는 이에 해당 안된다는 뜻)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심각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상태에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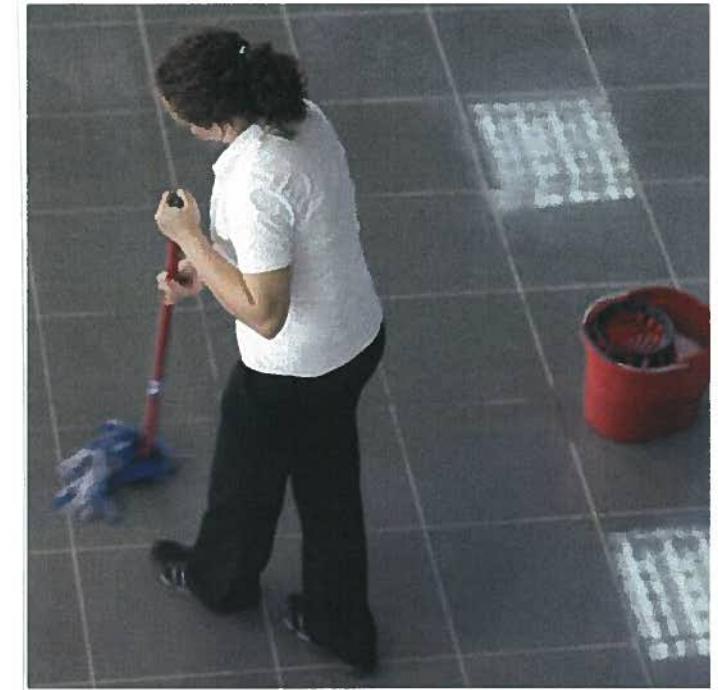
- 문제가 된 범죄에 대한 믿을 만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단순한 피해자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안됨, 증인, 증거등이 있어야 함)

- 그 범죄에 대한 조사, 기소등에 협조적이어야 함

- 미국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어야 함.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지만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도 드물긴 하지만 있음)

##### 다음 범죄의 피해자는 U visa 청원 가능함

납치	고의성 없는 살인
성적 학대	강간
협박	살인 (고의성이 있는)
가정 폭력	사법 집행 방해
강탈(착취)	재판 증인의 증언 방해
감금	성매매
여성 생식기 손상, 제거	성폭행
위증	노예적 노동
흉기를 사용한 폭력	고문
인질	마약 밀매
근친상간	성적 학대
불법적 규제, 속박	불법 범죄 억제
강제 노동	기타 관련 범죄들
유괴	



U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먼저 I-918 (Petition for U nonimmigrant Status)을 신청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은 반드시 I-918에 요구되는 보충서류 B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격이 되는 관련 가족들도 (예; 미성년 자녀) U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 T Nonimmigrant Status

##### (T visa 역시 비자의 한 종류임)

사람 밀수 – 인신 매매로도 알려진 –는 현대적 노예 거래이다. 인신 매매자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그 밀매 대상으로 삼는데 주로 가난하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불완전한 취업자를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인신 매매자들을 주로 피해자들을 좋은 직업, 더 넓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하고 나서는 잔인하고 가혹한 작업환경 속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신 매매가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신 매매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T visa는 이런 심각한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이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단, 피해자들은 인신 매매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협조해야 한다.

**USCIS 웹 사이트의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www.uscis.gov**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Record

USCIS에 문의하려면 번호로 전화 해요. **1 802 527 4888**

다른 사람이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1 800 375 5283**